

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의안번호 제1199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0. 1. 4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10. 1. 4
다. 상 정 의 결 일 자 : 2010. 1. 13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

2. 개정이유

고성군통합방위예규의 시행근거 마련과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법령에 맞게 조정(안 제2조)
나.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을 법령에 맞게 조정(안 제6조)
다. 고성군통합방위예규의 시행 근거 마련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

- 고성군 공고 제2009-735호(2009. 09. 11 ~ 2009.10. 10)
- 의견 제출사항 : 없음

나. 관계법령

-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, 제9조 및 제17조

다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라. 합의 : 관련실과 합의됨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통합방위법 제5조, 제9조,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등에 의거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과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을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고성군통합방위예규의 시행 근거 등을 마련하여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
- 그동안 주민공람·공고 과정에서 의견은 없었으며,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09. 9. 11일부터 같은 해 10. 10일까지 마쳤는데도 2010. 1. 4일 조례안을 제출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 :

- 2010. 1. 13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